

-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의 안 번 호	482
------------	-----

2019년 4월 22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3월 22일, 송아량 의원 외 11명 발의

나. 회부일자 : 2019년 3월 26일

다. 상정일자

- 제286회 서울특별시의회 제2차 교통위원회(2019년 4월 22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송아량 의원)

가. 제안이유

- 최근 취객에 의한 여성 택시기사 폭행 사건 등을 포함해 택시운수 종사자에 대한 범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택시 내부에 택시운수종사자를 폭력 등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장비나 장치도 없는 실정인 바, 폭력 등 위협으로부터 택시운수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택시 내부에 보호격벽 등 안전 장치 설치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택시운수종사자와

택시 이용 승객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을 담보하고자 함

- 아울러 서울시가 더 이상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 ‘외국인 관광택시 운영을 위한 사업’과 경과 규정에 따라 더 이상 재정지원이 되지 않는 ‘심야승차난 해소를 위한 지원 사업’, ‘운수종사자 복장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조문 정리를 위해 삭제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폭력 등 위험으로부터 택시운수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택시 내부에 설치하는 보호격벽 등 장치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신설함(안 제10조제2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19. 3. 29 ~ 4. 5

- 제출의견 : 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서울시장(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 원안가결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동수)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폭력 등의 위험으로부터 택시운수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차내 안전장치 설치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경과 규정 등에 따라 더 이상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사업에서 삭제코자 하는 것임

나. 검토 의견

■ 택시운수종사자 보호 위한 차내 장치 설치 관련

- 동 개정조례안은 2016년부터 지방자치단체 기부·보조 사업의 경우 관련 법률 및 조례 등에 근거한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된¹⁾ 사항을 반영하여 ‘폭력 등 위험으로부터 택시운수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내 장치 설치’ 사업의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참고 : 「지방재정법」 관련 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개정일 2014.05.28. / 시행일 2016.01.01.

- 2016년 서울노동권익센터 조사에²⁾ 따르면 주취자 등 승객에 의해 1개월 내에 1회 이상 반말·욕설·폭행 등을 당하는 택시기사 비율이 7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지난 2월 발생한 여성 택시기사 폭행사고 이후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안전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바, 동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임
- 한편, 서울시는 ‘택시운수종사자 보호격벽 설치’ 예산 25백만원에³⁾ 대한 2019년 예산안 심사 시⁴⁾ 시의회로부터 동 조례상 지원 근거가 없어 지적을 받았으며, 조례 개정 없이는 집행할 수 없는 상황임
- 다만, 지원 근거가 마련되더라도 운수종사자 보호격벽이⁵⁾ 설치되어 있는 시내버스와 달리 택시의 경우 차내 공간이 협소해 보호격벽 설치를 꺼려하고 있는 바, 서울시는 택시 보호격벽 등 차내 안전장치 설치 시 적절한 장치가 설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재정지원 사업 삭제 관련

-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심의 결과⁶⁾ 부적정 판정을 받아 2018년부터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관광택시 운영을 위한 사업’과 동 조례 부칙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와 2017년 12월 31일까지 각각 한시적으로 지원토록 한 ‘심야승차난 해소를 위한 지원 사업’과 ‘운수종사자 복장 지원 사업’을 재정지원 사업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별도의 문제는 없다 할 것임

2) 서울시 택시기사의 노동실태와 지원방안(2016, 서울노동권익센터)

3) 택시운수종사자 보호격벽 설치 : 25백만원 (※대당 100천원 지원 / 보호격벽 설치비 대당 200천원 중 서울시와 사업자 간 50:50 매칭사업으로 추진)

4) 제284회 정례회 도시교통본부 예산안 심사(2018.11.26.)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의 [별표4] 및 「시내버스 운전자 보호격벽 설치에 관한기준」

6) 2017년 제4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 외국인 관광택시 확대 운영 “부적정”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재정지원 및 예산의 확보 등) 시장은 예산범위 안에서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중장기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소요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운수종사자의 교육
2. 폭력 등 위험으로부터 택시운수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내 장치 설치

조례 제6045호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조례 제6493호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부칙 제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재정지원 및 예산의 확보 등) 시장은 예산범위 안에서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중장기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소요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p> <p><u>1. 외국인 관광택시 운영을 위한 사업</u></p> <p><u>2. 심야승차난 해소를 위한 지원 사업</u></p> <p><u>3. 운수종사자 복장 지원 사업</u></p> <p><u>4. 운수종사자의 교육</u></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부칙 <제6045호, 2015.10.8> 제1조(시행일) (생 략)</p> <p><u>제2조(심야승차난 해소를 위한 지원 사업) 제10조제2호의 규정은 2016년 12월 31까지로 한다.</u></p> <p>부칙 <제6493호, 2017.5.18.> <u>제1조(유효기간) 제10조제3호의 규정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u></p>	<p>제10조(재정지원 및 예산의 확보 등) ----- ----- ----- ----- ----- ----- -----.</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1. 운수종사자의 교육</p> <p><u>2. 폭력 등 위협으로부터 택시운수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내 장치 설치</u></p> <p>부칙 <제6045호, 2015.10.8> 제1조(시행일)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부칙 <제6493호, 2017.5.18.></p> <p><삭 제></p>